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제22조제1항중 “3월 이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종교집회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가목중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종교집회장”으로 한다.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사업관련 자진이주자 보상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접수번호	11
------	----

2003. 3.
도시관리위원회

1. 경 과

- 청 원 자 : 송파구 방이동 199-1 이달원 외 5인
- 소개의원 : 한응용 의원 (건설위원회)
- 접수일자 : 2003. 3. 3
- 회부일자 : 2003. 3. 4
- 상정일자
 - 제14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2003. 3. 20) 상정, 취지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청원요지

-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백제고분군 조성사업 지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 129세대 중 64세대는 “사업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진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최우선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강동구청장의 구두 약속을 믿고 자진 이주하였으나,

- 그 후 서울시에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공포일(1986. 11. 29) 이전에 자진 이주하였으므로 관계법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여 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있는바,
- 이에 청원인들은 서울시와 구청장의 구두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장기간 자진이주를 거부하다가 이주대책을 마련 받은 잔류세입자 65세대 및 유사한 시기에 시행된 택지개발 사업 시 타 구청의 자진이주 세입자들이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보상을 요구하는 청원임

3. 청원소개 요지 (건설위원회 한응용 의원)

-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1986년에 시행된 송파구 방이동 백제 고분군 조성사업 시, 강제 철거에 반대하던 세입자 129세대 중 64세대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자진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최우선 혜택을 부여하겠다”라는 당시 강동구청장의 구두약속을 받고 자진이주 하였음에도
- 서울시와 구청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끝까지 격렬하게 항거하며 자진이주를 거부한 잔류세입자 65세대에게는 이주대책을 마련 보상하고, 자진이주세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시행규칙」이 '86. 11.29 제정되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바,
- 시·구 행정을 받고 따르면 오히려 정신적·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행정불신 현상을 해소하고, 유사시기 발생한 타 구청 자진이주 세입자들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자진 이주에 따른 보상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4. 검토의견 (전문위원 양재대)

- 본 청원은 송파구 방이동 199-1, 이달원 외 5인이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백제고분군 조성사업 지역 내 거주하던 세입자 129세대 중 64세대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강동구청장의 구두약속을 받고 자진 이주하였으나,
-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포일(86.11.29) 이전에 자진 이주하였으므로 이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자, 타 구청의 자진이주 세입자와 동등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 하는 사안으로
- 강동구청장이 '82. 3. 20부터 '88. 12. 31까지 가락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 내 백제고분 조성사업 시행 중 사업지역 내 166세대(가옥주 37, 세입자 129)를 정비하면서, '86. 11. 29 「공특법시행규칙」 제30조의2 신설로 철거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근거가 최초로 마련될 때까지 잔류한 65세대에게는 '87. 10. 5 서울시에서 건립한 아파트 방1칸의 입주권을 지급하였으나
- 「공특법시행규칙」 공포일 이전에 자진 이주한 세입자 64세대에게는 관련법의 소급 적용이 안된다며 당초 구두약속과는 달리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자, 지금까지 계속하여 보상요구민원을 제기하여 옴에 따라
- 강동구에서는 '87. 11. 13 이주대책이 수립 불가함을 통보하였으며, '88. 9.23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기각되는 등 그간 구의회 청원심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제출, 시장과의 면담 등을 거쳐,
- 2001. 11. 21 제16차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차원에서 자진이주 당시('85. 12. 3 ~ '86. 11. 28)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64세대중 14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10점 가산점을 부여하여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조치」 토록 결정하여 2001. 12. 6 송파구청장에게 조치할 것을 통보한 바 있음
- 본 청원건은 '88서울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뒷마무리 대책의 미비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성 부족으로 발생하여 장기간 계속 되고 있는 민원으로서, 사업시행시 대책을 우선 마련하여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치밀한 행

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즉, 도시계획 사업시 자진 이주하여 행정청에 협조한 세입자는 불이익을 받고, 끝까지 남아 이주를 거부한 세입자는 혜택을 받은 사항은 행정의 신뢰성, 세입자간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사료됨

- 단, 본 청원의 경우 행정처리가 1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심판 재결 결과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결결과와 같이 관련 법규를 소급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2001. 11. 21 제16차 서울시정책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바와 같이 조치하는 이외에는 다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구 행정행위를 믿고 따르면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는 행정불신현상을 해소하고 구청간의 자진이주 세입자들간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공공주택의 분양권 우선부여 등의 특단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소위원회 구성 없음

8. 심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별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11		접수년월일	2003. 3. 3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99-1		
	성 명	이달원 외 5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한응용 의원(한나라당, 송파구 제1선거구 건설위원회)			
건 명	송파구 방이동 백제고분 사업관련 자진이주자에 대한 보상			
소관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요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25번지 백제고분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을 시행하면서 동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129세대중 선이주 후보상방식을 약속한 구청장의 설득을 받아들여 자진 이주한 64세대에 대해 자치구에서는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으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시행규칙」 공포일(86년 11월 29일) 이전에 자진 이주하였으므로 이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보상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이에 청원인들은 시·구의 행정을 먼저 믿고 따르면 오히려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우려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므로 그들의 잃어버린 생활터전과 재정적 손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자진이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내용의 청원임